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95
----------	------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안호영 · 최인호 · 김영주
송기헌 · 김두관 · 박 정
신창현 · 강훈식 · 문미옥
김상희 · 서영교 · 윤후덕
조승래 · 위성곤 · 김철민
황 희 · 임종성 의원
(17인)

제안이유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민대다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정보와 거짓뉴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통해 유포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가짜뉴스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대한 삭제 책무를 부여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가짜뉴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4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6호의2 중 “제45조의3제1항을”을 “제44조의2제7항을”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를 “가짜뉴스를 삭제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 중 “제47조제2항을”을 “제45조의3제1항을”로,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를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3.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⑥ (생략)</p> <p><u><신 설></u></p> <p>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p>	<p>제2조(정의) ①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u>“가짜뉴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u></p> <p>제76조(과태료) ① -----</p>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 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신설>

7. ~ 12. (생략)

② ~ ④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4조의2제7항을-----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6의3. 제45조의3제1항을-----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6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